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01
----------	------

제출연월일 : 2019.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사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를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로 함(안 제명)
- 나.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주민등록은 도내에 있고, 학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거주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라.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덧붙임 (비용추계서)

- 2019년도 청년배당 지급 예산액 : 2,748백만원
 - 도비 1,923,600천원 / 시비 824,400천원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7. 15. ~ 2019. 8. 5. (22일)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 제4조제1항”을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으로,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년배당” 을 각각 “청년기본소득”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청년배당” 을 “청년기본소득”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청년배당” 을 각각 “청년기본소득”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평생교육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팀장 직위·성명	대학청소년팀장 김유덕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이현식 (031-790-540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u></p>	<p><u>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u>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u>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청년배당</u>"이란 <u>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u>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청년기본소득</u>"이란 <u>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u> -----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청년기본소득</u> ----- -----.</p> <p>② <u>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u> ----- ----- <u>청년기본소득</u> ----- -----.</p>
<p>제4조(지급대상) <u>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민으로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u></p>	<p>제4조(지급대상) <u>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u></p>

현행	개정안
<p><u>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u></p>	<p><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u></p> <p><u>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u></p> <p><u>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u></p>
<p>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u>청년배당</u>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p> <p>② <u>청년배당</u>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익일에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u>청년기본소득</u>----- -----.</p> <p>② <u>청년기본소득</u>----- ----- ----- ----- -----.</p>
<p>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u>청년배당</u>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u>청년기본소득</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u></p>

현행	개정안
	<p><u>있다.</u></p> <p>1. <u>주민등록초본</u></p> <p>2. <u>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청년배당</u>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u>청년배당</u>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p>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 ----- --- <u>청년기본소득</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u>청년기본소득</u> ----- -----.</p>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기도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내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 2020년 이후 소요예산 : 2019.6.30.기준 인구통계 중 해당 연령 인구수 반영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2,748	2,995	2,882	2,808	2,549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지급	2,748	2,995	2,882	2,808	2,549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지급 : 도비 1,923,600천원 / 시비 824,400천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문화국 평생교육과장(박춘오)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0	0	0	0	0	0	
	0	0	0	0	0	0	
세 출							
청년배당 지급	2,748,000	2,995,000	2,882,000	2,748,000	2,808,000	14,181,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923,600	2,096,500	2,017,400	1,923,600	1,965,600	9,926,700
	보조금	1,923,600	2,096,500	2,017,400	1,923,600	1,965,600	9,926,7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24,400	898,500	864,600	824,400	842,400	4,254,300
	지방세	824,400	898,500	864,600	824,400	842,400	4,254,3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